

청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2가단24903 소유권이전등기
원 고 ○○○종중(변경전 명칭: ○○○종친회)
피 고 ●●●
변 론 종 결 2014. 2. 19.
판 결 선 고 2014. 4. 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- (1)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'원고는 □□□씨 ◆◆◆파(□□공 △△△) 중 ◇◇판서

공파의 후손들 가운데 ▽▽면 일대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에 연고를 둔 출향 인사들의 모임으로 종종 유사 단체이고, 그 회원은 ≡≡≡ 등과 그들의 직방계혈족인 가장들로 모두 14명이다'라고 주장하였다.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명칭은 '○○○종친회'였다.

(2) 원고는 이 사건 2013. 5. 17.자 준비서면에서 '원고는 □□□씨 ◆◆◆파 가운데 ◇◇판서공파의 후손들 중 ☆☆☆의 아들인 ★★를 공동시조로 한 종종'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, 그 후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.

나. 판단

(1) 공동시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의 허용 여부

(가)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종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종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,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종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. 종종의 특징은 그 종종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종의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종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종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종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).

(나)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, 원고는 ◇◇판서공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종 유사 단체라고 주장하다가 그 공동선조를 '★★'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는바, 가사 원고의 처음 주장을 ◇◇판서공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종이라는 주장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

도 원고가 그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.

(다)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에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종중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.

(2) 원고가 종중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(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)

(가)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,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,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,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, 조직,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,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,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다1166 판결 참조)

(나) 원고는, 원고 단체가 ○○년경부터 성문의 규약 없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높은 항렬의 어른이 대표자가 되고, 음력 ○○일 시제일에 정기모임을 갖는 등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.

(다)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원고의 조직이나 구성원 등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를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나경선